

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

귀하는 「검역법」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**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24:00까지 격리생활**을 하셔야 합니다.
(ex: 4월 1일 입국하신 분은 4월 15일 24:00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.)

공항 도착 후 주의사항

- ✓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, 다른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
- ✓ 검역 단계에서 **유증상자로 분류**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실시
*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.
- ✓ 무증상자의 경우 **자택으로 이동**하며, **입국 후 3일 이내**(유럽발, 미국발 입국자) 또는 **입국 후 14일 이내**(기타 국가발 입국자) 진단검사 실시
- ✓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,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, KTX(전용칸) 이용하기
*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기
- ✓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
- ✓ 행정안전부 '**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**'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,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기

격리자 생활수칙

- ✓ **격리대상자**
 -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
 -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주 환기하기
 -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 요청하기
 -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
 - 개인용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기
 - 발열, 기침,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
- ✓ **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**
 -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
 -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
 -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
 - 테이블 위, 문 손잡이, 욕실기구, 키보드,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기
 -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단시설(학교, 학원, 어린이집, 유치원, 사회복지시설,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등)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,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제한하기

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

개인 위생수칙

- ✓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
- ✓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✓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않기
- ✓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
- ✓ 발열,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

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활용 안내

*입국하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“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,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(실거주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,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)

안드로이드



<http://url.kr/9dqRor>

구글 플레이



<http://url.kr/5rntzH>

앱 스토어



<http://url.kr/f7dmWs>

ID : CORONA | 다운로드 : 스토어*에서 '자가격리자' 검색 *안드로이드(Play 스토어), 아이폰(앱 스토어)

※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,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. (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)

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,
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
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